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8.(화)

검 토 안 건	발 의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 1.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어르신동행과)
- 제출일 : 2023. 11. 17.
- 회부일 : 2023. 11. 20. (의안번호 : 23-145)

### 2. 제출이유

- 노년층이 가족과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 필요성

-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내외 다양한 네트워크와 서비스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는 위탁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의 효율성 제고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 및 관리

- 데이케어센터의 시설 운영,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
- 데이케어센터의 시설물, 장비, 물품, 비품 등 일체
-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일체

라. 위탁시설 현황

- 현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이랜드 복지재단  
(위탁기간 2019.6.1. ~ 2024.5.31.)
- 위치 및 규모 : 서강로1길 30 4층(창전동), 238m<sup>2</sup>
- 인력 : 12명
- 이용자: 23명(장기요양등급자)

마. 민간위탁기간 : 2024. 6. 1. ~ 2029. 5. 31.(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3년 예산 기준)

- 소요예산: 620,784천원(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수입 등)

## ○ 산출근거

구분	금액(천원)	비고
운영보조금(시비)	113,441	서울형인증시설 운영보조금 치매관리 프로그램지원비
이용자부담금	81,717	식대포함
요양급여수입	358,371	건강보험공단 청구
전입금	5,000	
후원금	13,800	
잡수입, 이월금	48,455	
합 계	620,784	

##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재가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자. 기타사항

- 민간위탁 추진일정
  - 민간위탁체 선정 방침 수립 : 2023. 11.
  -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2023. 11. ~ 2024. 2.

## 4. 검토의견

- 본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민간위탁 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2019년 6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무로,

-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과 관리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사무의 위탁기간이 6년 경과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본 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 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위탁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며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어르신동행과	김경숙 (8860)	이광재 (8861)

## 참 고 자 료

### 1.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 ...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8. 3. 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2023.3.9.>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